

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1. 18. -----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1998. 11. 18
- 다. 상 정 일 자 : 제72회 사하구의회(정기회)
제1차 총무사회위원회(98.11.26)원안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강 명 중 총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구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리구의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 구성 : 위원장1인을 포함한 3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- 위원장 :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
 - 위 원 - 구의회 부의장, 상임위원장
 - 부구청장, 사하경찰서 경무과장, 서부교육청 국장(과장) 등
 - 개혁과 국민운동 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- 고 문 : 구청장이 위촉(구의회 의장, 경찰서장, 서부교육청 교육장 등)
 - 간 사 : 총무국장
- 위원회 기능
 -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및 과제발굴 추진
 -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구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
 -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 협조,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제2의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2의건국 범구민 추진위원회 규정이 98. 10. 1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30~70만미만의 자치구는 35인이내의 위원을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건국범구민 추진 위원회를 출범시키기위한 본 조례로서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 운영규정까지 검토한 바 몇가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.

첫째, 조례안 제3조 제4항중 '위원회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'는 조항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5인정도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'5인정도'를 삽입하는 내용과

둘째, 조례안 제10조 '수당 등 조항 내용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'는 내용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는 위원회 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을 지급은 타당하나 관계공무원의 운영수당까지 지출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 되니 예산절감차원에서 '관계공무원'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